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01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최고 과세표준 구간 최저한세율 인하	3

I. 개요

1.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01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9. 16.

(3) 회 부 일 : 2025. 9.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의 100분의 17(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R&D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액감면 제도 등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최고 과세표준 구간 최저한세율 인하(김상훈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법인의 최저한세(제132조) ○ 대상: 내국법인 또는 원천소득이 중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 제외: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외국법인의 지점세 ③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④ 가산세 ⑤ 사후관리에 따라 추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⑥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세액제도 ○ 최저한세의 적용: Max (①, ②) ①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② 각종 감면 후 법인세액¹⁾ ○ 최저한세율: <u>17%</u>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2% - 100억원 이하: 10% - 중소기업: 7%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 유예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 1,000억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 최저한세율 2%p 인하 ○ 대상: (현행과 같음) - 제외: (현행과 같음) ○ 최저한세의 적용: (현행과 같음) ○ 최저한세율: <u>15%</u>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2% - 100억원 이하: 10% - 중소기업: 7%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 유예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김상훈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10)

1) 과세표준 × 법인세율 24%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억원 이하 9%)에 최저한세대상세액감면공제*를 한 금액을 말함.

*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포함

□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5%로 2%p 인하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32조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라도 세부담 형평성,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최저한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최저한세제도는 조세지원 제도의 과도한 활용을 통해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법인세 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법인세액 중 큰 금액이 되며,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저한세 : Max (①, ②)

①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② 각종 감면 후 법인세액²⁾

* 17%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2%, 100억원 이하 10%, 중소기업은 7%)

□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08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맞추어 인하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경기부양 및 복지재원 조달의 필요에 따라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08년에 1,000억원 이하 13%, 1,000억원

2) 과세표준 × 법인세율 24%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억원 이하 9%)에 최저한세대상세액감면공제*를 한 금액을 말함.

*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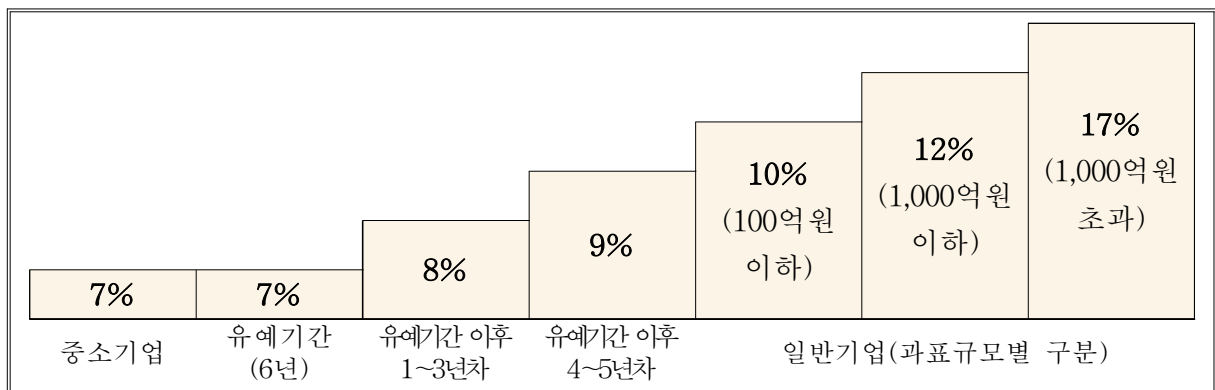
초과는 15%가 적용되었음. 2010년부터 100억원~1,000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100억원 이하는 10%로, 100억원~1,000억원은 11%, 1,000억원 초과는 14%로 세율을 인하하였음. 2013년에는 세율을 100억원~1,000억원은 12%, 1,000억원 초과는 16%로 인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1,000억원 초과는 17%로 재차 인상하였음.

[최저한세율 변경 경과]

과세표준		2005년	2008년	2010년	2013년	2014년 이후
중소기업		10%	8%	7%	7%	7%
일반기업	100억원 이하	13%	13%	10%	10%	10%
	100억원~1,000억원			11%	12%	12%
	1,000억원 초과	15%	15%	14%	16%	17%

또한, 2010년 세법개정시 중소기업 졸업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개정하였음.

[최저한세율 현황]



□ 최근 7년간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4년 신고기준 135,466개의 중소기업과 1,387개의 일반법인이 최저한세를 적용받았음.

[최근 7년간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신고 연도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수입금액	부담세액	신고 법인수	수입금액	부담세액
2018	14,817	57,298,487	143,824	843	263,274,620	3,364,844
2019	27,277	109,130,125	290,674	886	242,835,111	843,287
2020	38,070	160,375,075	438,808	952	222,655,904	565,993
2021	50,539	209,135,092	605,661	1,024	199,772,642	822,043
2022	66,084	286,663,640	908,833	1,188	297,300,210	837,623
2023	82,561	374,041,140	1,085,790	1,322	550,638,508	7,180,713
2024	135,466	505,019,829	1,508,532	1,387	494,249,607	2,670,624

자료: 국세통계포털(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 개정안은 1,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의 잠재적인 세법상 제약으로 인해 조세혜택의 확대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중복지원의 배제와 최

저한세 등으로 인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활용도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간의 중복적용이 허용되는 조세지원 제도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조세지원은 최저한세가 적용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한 항목 수의 추가적 제한이 발생하게 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일반기업의 2% 미만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경감은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해당 법인들이 부담하는 세액 규모는 전체세액의 약 75%에 달하는 바, 최저한세를 인하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음.

[최저한세 적용 일반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과세표준	2022년			2023년			2024년		
	법인 수	수입 금액	부담 세액	법인 수	수입 금액	부담 세액	법인 수	수입 금액	부담 세액
100억원 이하	1,084	92,505,719	145,573	1,211	144,130,597	156,278	1,201	161,357,677	198,362
100억원 ~ 1,000억원	94	69,611,368	224,384	92	41,198,136	238,754	163	124,503,318	412,585
1,000억원 초과	10	135,183,123	467,668	19	365,309,776	6,785,682	23	208,388,613	2,059,679
전체	1,188	297,300,210	837,623	1,322	550,638,508	7,180,713	1,387	494,249,607	2,670,624

자료: 국세통계포털(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둘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더라도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고,³⁾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각종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⁴⁾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중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문 의 처

02)6788-5154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또는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